



언론중재위원회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 역사 속 언론

사간원의 언론 활동

/ 위원회 뉴스

전북 지역언론인 워크숍 개최

위원회 광주사무소 이전 및 강의실 신설

2015
06

Vol. 180



새들의 생존법칙

설계도 허가도 없이 동그란 집을 짓고 산다

작은 부리로 잔가지 지푸라기 물고와

하늘이 보이는 숲속에서 별들을 노래한다

눈대중 어림잡아 아귀를 맞추면서

휘어져 굽은 등지 무채색 깃털 깔고

무게를 줄여야 산다 새들의 저 생존법칙

대문도 달지 않고 문패도 없는 집에

잘 익은 달 하나가 슬며시 들어와

남몰래 잉태한 사랑 동그마한 알이 된다

울타리 없는 마을 등기하는 법도 없이

비스듬히 날아보는

나는 자유의 몸

바람이 지나가면서 땀 속마저 비워냈다

김복근

- 1985년 《시조문학》 추천 원료, 창원대대학원(문학박사) 졸업
 - 한국시조문학상, 한국문협작가상, 유심작품상 수상
 - 경상남도문인협회장, 경남문학관이사장, 노산탄산100주년 기념사업회장, 한국시조시인협회부이사장, 오늘의시조시인 회의부의장, 경상남도거제교육청교육장 역임
 - 현 한국문인협회자문위원, 《화중련》 주간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ADR 전문교육 &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ac.or.kr

조정중재아카데미 edu.pac.or.kr

모바일웹 m.pac.or.kr

언론중재Eye-Net people.pac.or.kr

Contents

2015 June Vol.180

- 04 역사 속 언론 시간원의 언론 활동
- 06 문화가 산책 클래식 음악으로 그린 「영웅」
- 07 古典名句 불능진해不能盡解,
의난이극지宜難以極之
- 08 위원단상 우리 언론, 중국의 반면교사反面教師?
- 09 신 동의보감 녹차綠茶
- 10 상담노트 SNS에 게시한 글, 마음대로 보도할 수 있을까?
- 11 조정후기 저는 억울합니다
- 12 위원회 뉴스·위원동정
- 14 조정중재사례
- 15 독자마당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5년 6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3
편집·디자인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TEL 02-548-1008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사간원의 언론 활동

조선왕조는 정치 운영 과정에서 언론 담당 관청을 별도로 둘 정도로 언론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컸다. 요즘에는 신문의 독자투고란과 방송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장치가 상당히 다양하다.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선왕조에서도 일반 백성들이 왕에게 자신의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조선왕조에서도 매우 광범하고 효과적인 언론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중앙의 여러 관청 중 감찰 기관인 사헌부와 간쟁 기관인 사간원, 학술 기관인 홍문관을 합쳐서 '삼사'라고 하였다. 이들 기관은 조선의 대표적인 언론기관이었다. 무엇보다 이들의 언론 활동은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상당히 구체적이고 예리하였다. 군주의 통치행위는 물론, 일반 관료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탄핵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였다.

이중 사간원의 직무는 왕과 관련된 현실 정치에 대해 실질적인 언론 활동을 펼치는 것이었다. 왕의 통치 행위와 시정사 중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언론 활동은 물론, 현실 정치의 시비득실, 잘못된 인사 문제까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사간원은 태종 1년(1401) 문하부를 혁파하고 의정부를 설치할 때, 문하부 낭사를 독립시키면서 비로소 독립되었다. 여기에는 우두머리인 대사간 1명을 비롯하여, 사간 1명, 헌납 1명, 정언 2명 등 모두 5명의 관원이 있었다. 설치될 당시의 사간원 임무는 헌납간쟁(獻納諫諍)·박정차제(駁正差除)와 수발교지(受發敎旨) 등이었다. 이후 독립기관이 되면서 문서 출납 업무는 승정원으로 넘어갔고, 나머지 기능만 수행했다.

사간원의 관리가 되는 자격 조건은 매우 까다로웠다. 반드시 문과에 급제한 자 중에서 선발했으며, 본인에게 하자가 없어야 했다. 친가와 처가의 4조(아버지·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외할아버지)를 살펴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서, 강직한 언론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선발되었다.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었다는 전제가 명확했다. 군주의 과실을 간쟁하거나 시정의 득실을 논하려면, 간언하는 사람부터 높은 학문과 식견이 있어야 한다는 조선 지배층의 인식이 고려된 것이었다. 이와 함께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정직성이 요구되었다. 자신이 바르지 않고서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거나, 백관의 규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



격을 구비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적임자라고 생각되면 퇴직했던 사람이거나, 혹은 직위가 높거나 낮은 경우에도 임명되는 사례가 있었다.

일단 간관이 되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신분의 보장과 특별한 예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한 예로 대간은 인사 고과(포폄)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이들이 당상관에게 인사하면 당상관들도 정중하게 답례를 해야 했다. 사헌부의 관원과 유사한 특별대우를 받았으나, 사간원의 관리가 더욱 극진했다. “사간원은 나의 과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모두 언론을 하니, 다른 관청과 비교가 안 된다. 마땅히 우대해야 한다.”라고 한 태종의 말은 사간원이 어느 정도 대접받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간관의 우대는 사헌부의 감찰(정6품)과 사간원의 정언(정6품)에 대한 대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헌부는 대사헌부터 지평(정5품)까지 대장(臺長)이라 하면서 감찰은 제외했으나, 사간원은 대사간에서 정언까지 모두 대장이라고 했다.

두 기관 사이의 상하 관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났다. 동일한 품계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2품아문의 사헌부 감찰(정6품)이 3품아문의 사간원 정언(정6품)보다 상위계급이었다. 그러나 감찰을 수

행한 자가 정언에 제수되는 예는 있어도, 정언을 수행한 자가 감찰에 제수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대해 성종 4년 정인지가, “정언은 임금의 좌우에 있으면서 시비를 논하니, 그 직임을 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정6품이었지만, 백관을 규찰하는 감찰보다 군주의 과실을 논하는 정언의 직책을 중요시했던 것이다.

사간원의 관리들은 사헌부의 관리들이 누릴 수 있는 법적인 대우 외에 업무량도 적었다. 엄정한 근무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상하관 사이에 준비의 구분도 없었다. 심지어는 공무 수행 중에 음주를 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았다. 제도적이든, 관행적이든 간관에게 그러한 대우와 기풍을 허용했던 것이다. 다른 관료와 달리 기개를 살릴 필요가 있었고, 그만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 부담에 대한 반대급부가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 학계와 정계, 경제계와 종교계, 문화계와 예술계 등 다양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조선시대 사간원의 관원들과 일치할 수는 없지만, 이들에게도 사간원이 누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의 간관들이 견지하고 있던 기개와 강직한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의무는 도외시 한 채 권리와 혜택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역사는 언제나, 정확한 언론 활동이 무엇인가를 묵언으로 묻고 있기 때문이다.



클래식 음악으로 그린 「영웅」

지난 몇 년 간 이른바 '영웅' 열풍이 불고 있다. 영웅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초인간적이며, 초역사적인 업적을 남긴다. 이러한 영웅을 드러내는 방식도 다양해서,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는 이순신을 끊임없이 사유하고 고뇌하는 인간으로 그렸고,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나 영화 〈명량〉은 불리한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적을 깨부수는 강력한 존재로 그렸다.

우리는 이러한 영웅의 모습을 보면서, 영웅을 탄생시킨다는 난세(亂世)가 지금이 아니냐며 그의 출현을 기대해보는가 하면, 자신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영웅이 아니냐라는 자문과 용기를 가져보기도 한다. 그래서 영웅을 소재로 한 작품은 어느 시대나 환영받아왔다.

● 전장의 영웅부터 그의 애인까지

클래식 음악의 작곡가들을 떠올려보면 모차르트(1756~1791)와 베토벤(1770~1827)처럼 남성들이 많다. 오늘날 음악 전공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는 사실에 비하면 좀 놀랍다. 어쨌든 사내아이가 인형보다는 로봇과 전장놀이를 택하듯이 그들 역시도 남성적이며 '영웅'과 같은 소재를 택했다. 특히 가사가 없이 악기만으로 연주하는 기악음악으로 영웅을 어떻게 묘사할까 싶지만, 실제로 몇 개의 곡을 들어보면 웅혼한 필치로 각자가 생각하던 영웅을 음표로 표현해냈다.

그 중 첫 번째로는 베토벤의 곡을 꼽을 수 있다. 애호가들끼리는 '베토벤의 황제'와 '베토벤의 영웅'이라 하면 각각 피아노 협주곡 5번과 교향곡 3번으로 통용된다. 1803~1804년에 작곡한 교향곡 3번 '영웅'은 프랑스의 나폴레옹(1769~1821)에게 헌정하려는 작품이다. 베토벤은 유럽 개혁의 주도자로서 그를 존경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지위에 오르자 베토벤은 몹시 화가 났다. "그도 역시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 이외의 모든 인간 위에 올라서서 독재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나폴레옹의 이름이 적혀있던 악보의 표지를 찢어서 내팽개친 것으로 전해진다.

베토벤은 총 9곡의 교향곡을 작곡했는데, 이 교향곡에는 '영웅'이라는 부제가 붙어서인지 가장 웅혼하게 다가온다.

그런데 이처럼 '영웅'을 소재로 한 곡들은 그냥 감상하면 재미가 없다. 자신이 영웅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들어야 재미가 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한테 혼나고 짓밟혔다고 치자. 복수를 해야 하는데(물론 상상 속에서), 그때 배경음악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쓰면 좋을 것이다. 피아노 협주곡이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함께(협연) 하는 형식이다. 이 곡은 1809년에 작곡되었는데, 사실 '황제'라는 부제는 베토벤이 붙인 게 아니다. 황제란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곡이 웅대하고 규모도 크며, 당당하고 화려하기에 후대가 붙인 이름이다. 특히 1악장이 앞에 말한 복수전의 배경음악으로 적절하다. 다소 전투적인 느낌도 드는데, 베토벤이 이 곡에서 나폴레옹의 군대나 그로 상징되는 적군에 대한 자기 나름의 투쟁을 음악적으로 상징화하며 전개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사실 나폴레옹이 빈을 점령했던 시절, 베토벤은 프랑스군 장교와 마주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내가 작곡만큼 병법에 정통했다면 맥을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도처에서 포탄이 터지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오케스트라를 병사들로, 피아노를 그들을 이끄는 장군으로 상상하며 직장 상사인 적군에게 돌진해보자.

그런데 상사, 아니 적군은 역시 만만치 않다. 돌진하다가 (비록 상상속이라고 해도) 적이 쏜 포탄에 쓰러질 수 있는 법. 영웅이라고 힘들지 말라는 법이 있다. 그럴 때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1864~1949)의 교향시 '영웅의 생애'를 들어야 한다.

'영웅의 생애'가 발표(1899년)되던 19세기에는 독일에 '영웅' 열풍이 음악계에 불던 때였다. 앞서 말한 베토벤이 영웅이 지닌 힘을 상징적으로 묘사한다면, 슈트라우스는 영웅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주는 듯하다. '영웅의 생애'는 여섯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1)영웅, (2)영웅의 적, (3)영웅의 애인, (4)영웅의 싸움터, (5)영웅의 업적, (6)영웅의 은퇴와 완성이다. 컷가에 가장 인상적으로 들려오는 부분은 '영웅의 애인' 대목이다. 애인이란 곧 슈

古典名句

신정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장

불능진해 不能盡解, 의난이극지 宜難以極之 (논형 論衡)

트라우스의 아내 파울리네를 상징하며, 두 대의 하프가 감미로운 선율을 자아낸다. 마치 상처 입은 영웅을 치료해주는 여인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영웅의 생애'는 슈트라우스 자신의 자아상을 강하게 반영하여 역경을 극복하며 궁극의 성취를 향해가는 한 영웅, 즉 위대한 예술가의 초상을 그린 작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 영웅을 그린 음악은 지금도 탄생 중이다

그 밖에도 쇼팽(1810~1849)이 작곡한 피아노 독주곡인 폴로네이즈 6번에도 '영웅'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일설에 의하면 막 완성된 이 곡을 쇼팽이 연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투구를 쓰고 전투복을 입은 고대 폴란드 전사들의 행렬이 전진해오는 환각에 빠져 공포에 질린 나머지 방에서 뛰쳐나갔다고 한다.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1862~1918)도 영웅을 소재로 작곡을 했는데, 앞의 곡들과는 다른 조용한 곡이다. 이른바 '영웅의 자장가'. 1915년 말에 벨기에의 왕 알베르 1세와 그 병사들을 칭송하기 위하여 쓴 곡이다. 자장가라는 말에서 영웅이 갑자기 애기처럼 느껴진다. 사실 영웅의 서사에는 그를 보살피는 여인이 꼭 등장하여 영웅을 어르고 위로해준다. 이 곡은 그런 여인의 나지막한 손길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밤의 어두운 기운이 담겨 있는 묘한 곡이다.

영웅을 소재로 한 작품은 어느 시대나 환영받았다. 우리나라의 신화에도 여러 영웅이 있다. 이런 영웅의 이야기가 궁극하다면 국립오페라단이 마련한 창작오페라 '주몽'을 관람해도 좋을 것이다(6월 6~7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창작오페라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형식을 따르되 한국어와 한국적인 느낌이 강한 음악으로 된 장르를 일컫는다. 창작 오페라의 맛도 보고, 교과서와 역사서로만 만나던 영웅의 신화를 오페라의 음악으로 접하는 것도 영웅을 만나는 색다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지만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전과 다른 환경을 만나더라도 습관에 따라 "하던 대로"를 외친다. "하던 대로"가 몇 차례가 막히면 그제야 서서히 다른 방식을 생각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각종 사건 사고가 되풀이해서 일어나고 있다. 지상과 수상과 공중을 가리지 않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정부는 원인의 철저한 분석과 완벽한 대책의 마련을 외치지만 공염불에 가깝다.

왜 그럴까? "이쯤 하면 되겠지!"라고 선을 긋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학계와 언론계에서 그 한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추궁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후한시대를 살았던 왕충의 이야기를 들어볼 만하다. 그는 가슴에 세상을 고칠 웅재대락을 품고 있었지만 한직을 떠돌았다. 그는 공직에 참여하여 큰 세상을 대면할 수 없자 당시에 있었던 모든 논의와 학술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허망한지 분석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답론을 저울질하여 값을 매기겠다는 '논형(論衡)'의 저술로 이어졌다.

왕충은 '논형'을 하는 작업 중에 공자(孔子)도 비껴갈 수 없었다. 춘추시대 공자는 세상을 구하자고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며 '논어(論語)'를 남겼다. 한 제국에 이르러 공자와 '논어'는 침범할 수 없는 엄청난 권위를 가졌다. 하지만 왕충은 '논어'의 모든 말이 금과옥조와 같은 귀한 말이 아니라며 검증의 필요성을 외쳤다.

"바로 파악되지 않으면 마땅히 물어서 밝히고,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마땅히 따져서 끝까지 파헤쳐라!"(不能輒形, 宜問以發之. 不能盡解, 宜難以極之.)

언론은 시민을 대신하여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명확할 때까지 파헤쳐야 한다. 그래야 잘잘못이 가려지고 책임 소재가 드러나서 문제가 쌓이고 쌓이는 '적폐'가 되지 않는다. 적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는 습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문제의 밑바닥까지 진실을 찾아낸다면 사건 사고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우리 언론, 중국의 반면교사(反面教師)?

한 국가의 언론 상황은 그 나라 정치체제의 영향을 받는다. 다원주의의 자유언론과 전체주의의 관방언론이 그 대별(大別)로 볼 수 있겠다.

3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국에서 홍보 공사(중국에서는 선전, 또는 신문 공사라고 불렀다)로 근무할 당시 중국 정부 인사나 중국 언론사 간부들을 만날 때면 반드시 듣는 소리가 있다. 그것은 “왜 한국 언론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만 보도하는가?”이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정부에서 파견 나온 홍보 담당 공무원이 왜 이를 통제해야 하지 않는가.”하는 볼멘소리를 한다. ‘남의 속도 모르고...’ 이럴 때마다 한국 언론의 자유, 기자와 공보관과의 관계 등 한국의 언론 상황에 대해 설명은 해보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론의 자유와 자유 언론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 언론의 중국에 대한 보도는 그들의 치부(恥部)를 자주 보도했던 것 같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 결과는 우리 독자들에게 중국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여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과 ‘현실’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 언론은? 여기서 중국 드라마 역사상 전대미문의 히트작 ‘대장금(大長今)’과 관련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의 유력 신문으로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 신문은 매년 연말이면 그해 가장 인기 없었던 중국 드라마 50편을 인터넷 인기투표로 선정한다. 그 결과 1등한 드라마를 발표하고, 투표 결과를 토대로 공개 토론회를 거쳐 중국 드라마 발전을 논의해 오는 프로그램이 있다.

2008년 말 네티즌 여론 조사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조사를 개시한 후 몇 주간 계속해서 1등을 차지한 드라마가 대장금이었

다. 그 당시 대장금은 중국인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시청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대장금이 한국 드라마라는 사실을 모르는 중국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유력매체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중국인들은 대장금을 재미없는 중국 드라마 1위로 투표를 하고 있었다. 물론 그 여론 조사는 우리의 항의를 받고 대장금을 뺀 49편의 중국 드라마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우리 드라마 대장금을 지목하여 질타한 해프닝이 벌어진 것은 당시 북경을 립픽을 앞두고 양국 젊은이들 간의 미묘한 갈등, 즉 혐한정서를 교묘히 표출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중국은 경제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치, 사회, 문화 분야 등 그 외 영역은 아직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대부분의 언론은 당과 정부가 장악하고 통제하는 관영매체들이다. 언론은 당과 정부의 의중을 읽고, 언론의 이슈를 여기에 맞추어 보도한다. 이러한 제반 현상들을 그들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로 설명한다.

이렇듯 한국과 중국의 언론 보도 행태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로 인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의 보편적 이념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언론에는 책임성 제고, 중국 언론에는 자유의 확대가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 정부와 언론계는 한국의 언론을 유심히 관찰하고 연구한다. 왜냐하면 ‘물극필반(物極必反)’의 지혜가 있는 중국인들은 그들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조만간 도래할 민주화에 맞추어 언론의 자유를 신장(伸張)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민주주의 체제의 한국 언론의 자유가 보이는 행태를 그들의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기 위해서다.

신 동의보감

김태균
한의사



녹차 綠茶, green tea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다. 만리장성을 쌓으며 대륙을 호령하였던 진 시황제(秦始皇帝)는 늙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머나먼 이웃나라까지 사신들을 보내었지만 49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인체를 노화(老化)시키는 물질이 있다. 대표적인 물질이 활성산소(活性酸素, free oxygen radicals)이다. 사람의 몸에는 항상 노폐물이 발생하는데 여러 대사 과정 속에서 활성산소가 생겨나, 생체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게 된다. 활성산소는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고 과산화지질을 만들며, 혈액을 탁하게 하고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들어 버린다. 과산화지질은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독성이 강해 건 강한 세포를 죽이는 일을 한다.

나이가 들면 점차 당뇨, 고혈압, 비만, 갱년기 증후군이라든지 각종 종양이나 여러 가지 병이 생겨난다. 그 이유는 노화물질인 활성산소와 연관이 되어 있다. 공해와 나쁜 환경, 술, 담배, 인스턴트 음식,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활성산소를 만드는 주범이다. 이러한 노화물질인 활성산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산화물질을 섭취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C, E와 녹황색 야채에 포함된 카로틴 등의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흔히 우리가 마시는 녹차(綠茶, green tea)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물질인 카테킨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동의보감에서 언급되어 있는 녹차의 성질은 몸을 차갑게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오래 복용하면 몸의 지방을 제거하여 비만한 사람에게 좋다고 소개하고 있다. 녹차는 소화효소인 아밀라제와 리파아제의 기능을 억제한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뒤 녹차를 마시게 되면 소화가 잘되지 않고 흡수가 잘 안돼 기운이 빠지게 되고 몸도 다소 차가워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소 비만한 사람은 녹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다

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반면 마른 사람은 꿀을 조금 섞어먹으면 된다.

녹차를 마시게 되면 노화방지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에도 도움이 된다. 다양한 만성적인 여러 질환에 효험이 있는데, 심장병이나 혈액순환 장애에 효과가 있다. 비만, 당뇨, 과민성 장염에도 좋으며, 헬리코박터를 억제하기에 만성 위염에도 좋다. 면역기능을 상승시켜 감기를 예방하기도 하며, 신장 결석의 위험수치를 낮추며 백내장을 예방하여 눈을 맑게 해주며 뼈를 강화시킨다. 몸의 여러 염증 질환에 효과가 있고 간 해독 기능을 도우므로 숙취해소 효과도 있다. 기억력을 좋게 하며 치매를 예방하며 몸을 떠는 파킨슨씨병도 예방한다.

최근 우리는 평소에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인스턴트 음료를 즐겨 마시게 되었다. 그로 인해 점차 비만뿐만 아니라 성인병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 요즘 커피믹스에도 폴리페놀 성분을 첨가하고 있는데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가 있다.

우리는 대개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약을 먹어야 하고 당뇨가 생기면 당뇨약을 먹어야 하고 비만약을 복용하는데, 녹차는 이러한 성인병을 위한 종합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자주 폭음, 폭식, 과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작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한 채 가족과 회사를 위해 일하기에만 바쁘지 않았던가. 우리나라에도 150만 명의 보성 녹차밭이 있다고 한다. 녹차향을 맡으며 사랑하는 부모 형제, 다정한 친구들과 함께 지냈던 몸을 녹색으로 물들여 보시길 권해 드린다.



SNS에 게시한 글, 마음대로 보도할 수 있을까?



최근 인터넷 신문의 기사에는 SNS의 글을 인용한 부분이 자주 눈에 띈다. “이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 라는 반응을 보였다” 등의 문구를 기사 말미에 넣는 것이다. 가끔은 특정인이 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보도하는 기사도 있다. 몇 해 전 축구선수 기성용이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해 쓴 글이 보도되면서 화제가 되었고, 법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SNS 글은 심심치 않게 언론에 의해 공개된다. 과거에는 기자들이 은밀한 취재를 위해 문 앞에서 벽에 귀를 대고 있었다면, 요즘은 컴퓨터 앞에서 SNS의 글을 검색하는 것으로 대체된 듯하다.

그렇다면 기사가 SNS의 글을 작성자의 동의 없이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까? 이로 인해 작성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는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전화 상담을 요청한 Y씨가 이런 경우이다. Y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자친구 공개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모 인터넷 신문에 보도되었다. Y씨와 친구를 맺은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공개범위를 제한해서 올렸으며, 이 글이 보도가 될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어 곤란한 지경을 겪고 있다면서 어떤 구제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해왔다.

언론이 Y씨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일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과연 SNS는 내 방, 또는 내 일기장처럼 사적인 공간일까?

사실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단순히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공간이다. SNS에 글을 게시하는 목적은 자신의 글을 다른 이들이 더 많이 알아주고 호응해 줌으로써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일단 글을 게시한 이상 다른 이들이 공유 또는 리트윗 함으로 인해 나와 관계 맺지 않은 제3자에게 순식간에 전

파되며, 내가 삭제한 이후에도 글은 어디엔가 남고 언제든지 검색될 수 있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머물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이용하는 이유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함이니, 일기장에 적는 글과 달리 SNS는 완전히 사적인 영역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SNS의 글을 공개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인지 여부도 역시 애매모호해지는 것이다.

Y씨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영국의 언론자유구제기구인 PCC(Press Complaints Commission)의 결정을 소개했다. PCC에 따르면 SNS 보도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보 및 보도의 성격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 즉 SNS의 글이 개인신상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비록 소수의 지인들에게만 공개하여 일반인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게시한 내용이 순전히 개인 신상에만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의 대상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며 공적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이라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Y씨의 경우 “여자친구 공개모집”이라는 주제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이며, 보도의 내용도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Y씨의 글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여지가 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 법원의 확립된 논리가 아니므로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조정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해서인지 Y씨는 아직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과연 Y씨가 조정을 신청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까. 나 또한 SNS 이용자로서 이런 경우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상담이다.

저는 억울합니다



- 신청인의 반박 광고에 대한 기자의 조정청구를 각하한 사례

필자는 전북사무소장으로 부임한 이후 유독 특정 지역 몇 곳의 조정신청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신기하고도 궁금했다. 도시가 확장되는 도농복합지역은 각종 개발 및 이권 관련 분쟁이 많으니까 그렇다 쳐도, 인구 3만 남짓한 농촌지역은 다 형님 동생 사이일 듯한데, 왜 그렇게 싸우는 것일까.

이러한 연장선에서 최근 이 지역 조정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들어온 건은 이 지역의 일부 민간단체장들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각종 선거에 적극 개입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유력 A민간단체 대표와 사무국장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언급한 보도에 대해 대표와 사무국장이 신청한 사건이다.

보도에는 단체명이나 임원 이름이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A단체 사무국장이 지난 군수 선거 때 선거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미루어 짐작컨대 어느 단체의 누구인지 주위에서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관할 검찰청에 사실조회서를 보내서 작년 6월 군수 선거 때 처벌받은 그 지역 인사 명단을 받았더니 역시나 3인에 불과했다. 언론사 답변서 내용과 관할 지자체에서 받은 사실조회 회신을 검토해 보니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였다.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권했더니 담당 데스크는 지역주재기자가 익명처리를 했는데 왜 정정보도를 해야 하나며 사표를 쓰겠다고 한다면서 난감해 했다.

보도에 화가 난 신청인들이 조정신청 전 지역신문에 의견 광고로 해당 기자의 기사에 반박하는 내용을 게재한 것 역시 조정에 암운을 드리웠다. 기자가 의견 광고를 보고 신청인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것도 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듯 했다. 장내에서 싸울 선수들이 경

기장 밖에서 먼저 싸우는 듯한 광경이랄까.

그래도 신청인과 기자가 평소 형님 동생 하던 사이라고 했으니까 중재위에서 원만히 합의하면 기자도 고소 취하할 것으로 생각해서 양 당사자를 상대로 조율을 했고, 고소취하를 포함한 조정안을 만들었다. 심리 결과 우여곡절 끝에 정정 및 반론보도로 일괄 합의되었다. 합의서에 일괄 해결을 위해 고소취하를 위한 기자 사인란도 넣었으나 기자는 심리 후 사라져 버렸고 그냥 신청인들과 언론사간의 합의가 성립했다.

사건이 잘 끝났다고 생각한 건 오산이었다. 심리 후 주말이 지난 월요일 아침, 찾아온 기자는 억울해서 한숨도 못 잤다면서 지역에 실린 신청인들의 반박광고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 보도문이 의견 광고로 보이고 의견 광고는 위원회 관할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자기는 억울하다며 접수해 달라고 했다.

사건이 사건을 묻고 들어오는 것은 위원회 담당자들이 우려하는 케이스. 하지만 어찌랴, 합의는 시켜도 화해는 못시키는 사건도 있는 법. 중재부의 예비심리 결과, 본 조정대상 글은 의견 광고에 해당하고, 의견 광고는 위원회 관할인 언론보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지역지로부터 한 달 치 신문을 받아 보니 독자 투고와 해당 광고는 형식이 다르며, 신청인들이 광고료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광고 판단의 이유. 또한 의견 광고는 광고주의 주장일 뿐, 언론의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도 추가되었다.

결정 후 신청인 기자에게 통보하니 여전히 자기는 억울하다고 했다. 신청인과 기자가 지역에서 형님 동생하면서 서로 도와주던 예전의 관계로의 회복은 불가능할 것인가. 아직도 궁금하다.





헌법재판소, '제3자 시정권고 신청권한 삭제' 표현의 자유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

언론보도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삭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 제32조 제1항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3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모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취재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공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신청을 했으나, 피해자가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이 언론중재법에서 삭제된 사실을 알고, 시정권고 신청권을 삭제한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언론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위해 피해자가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삭제했지만, 시정권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3자가 언론사 등에 공정보도를 위한 시정요구나 참여의 기회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며, 청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청원권을 행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위한 청원을 하거나, 언론중재법상의 고충처리인제도 또는 방송법상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이나 청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언론의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 시정권고가 아닌 해당 언론사 등을 상대로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이 피해자가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언론중재법은 2005년 제정 당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시정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아닌 자에게까지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로운 언론활동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2월 법률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전북 지역언론인 워크숍 개최



위원회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재즈어라운드호텔에서 전북 지역 언론인들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바람직한 인터넷신문의 역할과 언론조정·중재제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전북 지역의 10여 개 인터넷언론사 대표 및 소속 기자들이 참석했으며, 인터넷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분쟁의 원만한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 상시 운영



5월 20일 위원회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쌍생어린이기자단 학생들이 모의조정을 시연하고 있다.

위원회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인턴십 프로그램을 학기 중에도 확대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5월 한달 동안, 어린이 대상 매체인 쌍생뉴스의 쌍생어린이기자단을 비롯하여 서울 영란여자중학교 등 3개 중학교 60여 명의 학생들이 위원회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은 언론 자유와 인권권 침해,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강의, 모의조정 실습, 위원회 심리실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 및 8개 지역사무소(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남)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교육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02)397-3095.

위원동정
—
COMMISSIONERS

공공갈등 관리와 언론대응 과정 ADR연수 실시



위원회는 5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서울시 공무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제2차 공무원 ADR 연수'를 실시했다.

제2차 공무원 ADR 연수 과정은 공공 갈등의 원만한 해결방안으로서 ADR의 개념 및 사례 연구, 언론조정중재제도 및 지자체의 실제 언론조정사례 연구 등을 바탕으로 한 '공무 현장 속 갈등관리와 언론대응 과정' 교육으로 구성됐다. 또한 미디어와 언론홍보의 이해, SNS 활용방법 등 효율적인 정책 홍보를 위한 특강도 함께 진행됐다.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2015년 여름호 발간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2015년 여름호(6월 1일자, 통권 15호)가 발간됐다. 여름호에는 조정·중재를 성공으로 이끄는 '프레임링(framing)' 활용법, 한국 문화의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조정전략, 맹자에게 배우는 설득과 수사, 갈등 당사자간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는 조정기법 등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위원회 홈페이지(pac.or.kr)와 모바일웹(m.pac.or.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위원회 광주사무소 이전 및 강의실 신설

위원회 광주사무소가 5월 18일 광주 남구 대남대로에 위치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빌딩 A동에서 B동 5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또 강의실(7층)을 신설해 언론분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지역 언론인 교육과 초중고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번호는 이전과 같다. (062)676-0360~1.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제



지성우 위원(서울제7중재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5월 15일 서울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공동 주최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에서 “잊혀질 권리 도입 시 법제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글로벌 방송 포맷 개발 워크숍’에서 강연



김명중 위원(광주중재부,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5월 11일 서울 콘텐츠코리아 랩 제1센터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포맷 개발 워크숍’에 참석하여 “2015년 한국의 TV포맷”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모델’ 세미나에서 발제



홍문기 위원(경기중재부,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은 5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주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모델’ 세미나에서 “통일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연구방법”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네팔지진피해돕기 성금 전달

위원회 임직원 일동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 국민을 돕기 위해 5월 28일 성금 3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사무처 인사(6월 1일자)

〈전보〉 △경기사무소장 최명진



■ 조정대상보도뿐 아니라 인터넷에 확산된 펌글·댓글로 인한 피해도 일괄 구제

C방송은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20대 여성들의 남성 기준”에 관한 주제 영상을 방송하면서, 일반인 출연자인 신청인들이 남성의 조건으로 ‘외제차’, ‘연봉 5천만원’ 등을 언급하는 장면이 신청인들의 실제 의견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해당 발언은 제작진들의 요구에 따른 것인데도 설정된 상황이라는 설명 없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되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항의를 받은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 점, 두 차례에 걸쳐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점, 또한 방송 이후 신청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게시물 작성자들에게 삭제를 요청했던 점 등을 인정하여 금전적인 손해배상 대신 방송 중 자막으로 정정보도를 2회 게재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인이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 및 댓글이 게시된 URL을 알려줄 경우 피신청인이 즉각 게시자에게 삭제 요청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상표를 여과 없이 보도한 방송, 정정보도문 게재

A방송은 값싼 중국산 전자담배가 폭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 제품의 상표만 모자이크 처리 없이 자료화면으로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 대상인 저가(低價) 중국산 제품과 달리, 신청인 회사 제품은 이중보호회로장치가 있어 폭발과는 무관한데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 상표가 드러난 제품을 여과 없이 보도해 제품의 안정성에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로 매출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방송은 신청인 회사 상표를 전자담배의 전원 버튼으로 오인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했다고 인정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사를 밝혔으나 조정대상보도가 매출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에는 난색을 표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보도 과정의 실수를 인정했고, 피해구제를 위해 신속하게 정정보도할 것임을 약속한 점, 또 매출 감소 원인이 조정대상 보도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정정보도만으로도 충분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정정보도에 합의하도록 양 당사자에게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중재부 권유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경찰관의 과장·왜곡된 비위사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B신문은 경찰관인 신청인이 의무경찰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부하 소대장들에게 술값을 반복적으로 대납하게 한 비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전보 조치만 이뤄져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있었으며,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낙하산 인사가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

해 신청인은 서울지방경찰청 감찰 결과 부대 운영상 몇 차례 욕설한 것은 사실이나 보도내용이 과장됐고, 부하들에게 술값을 대납시킨 사실은 없으며 신청인의 보직은 정당한 인사였다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부하 대원에게 욕설 등을 한 행위는 인정되나 술값을 대납하게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이 밝혀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게재함과 동시에, 신청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명예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낙하산 인사 관련 내용은 삭제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건보도에 사용된 유명 한의사의 방송자료화면, 삭제로 합의

D방송은 쌍둥이를 낳게 해준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진료를 한 한의사에 대해 한의사 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의사 자격정지를 요구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과거 한의사 협회 자격 정지 전력과 함께 흡소핑 출연 당시의 모습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흡소핑 출연 영상을 함께 사용하여 마치 비상식적인 진료를 한 한의사가 신청인인 것처럼 보도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한의사 관련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해당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신청인의 과거 징계 사실과 자료화면을 보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신청인에게 전달하면서, 피신청인의 유감표명과 함께 해당 보도의 ‘다시보기’ 영상에서 신청인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선에서 합의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신승남

—
5월호 초상권 침해 사례에 관한 기사를 보며 새삼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 활약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돼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언론  사람」의 지면을 통해 보니, 앞으로도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은 늘 상존하고 있다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관과 단체의 행정지도나 중재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선행될 것은 대중문화예술인 같은 특정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초상권의 범위 등을 확실히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상권 침해에 관한 사례나 초상권 침해에 대한 매뉴얼을 보다 많이 홍보해 계도해나간다면 권리 침해 문제로 인한 논란은 지금보다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예견됩니다.

우점순

—
〈연예인 보도와 사생활 침해〉를 읽고 공인에 대한 언론사의 알릴 의무가 우선이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나를 놓고 참으로 애매모호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을 엿보게 됩니다. 언론에 연예인의 결혼, 이혼 등 극히 프라이버시에 관한 기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오르내려 도대체 보도할 것이 얼마나 없으면 개인 사생활까지 집착해 보도하는지에 대한 불평불만이 제기되곤 합니다. 한편으로는 유명 연예인들이 이미 알려진 공인이므로 어느 정도까지는 보도가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보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대사회는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다단하게 얽히고설켜 있어 분간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개인의 치명적이며 불가침한 사적 영역은 보호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소통하는 창,
언론중재위원회 SNS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www.facebook.com/pacnews

 twitter.com/pac_news



조정중재신청,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Eye-Net

<http://people.pac.or.kr>

언론중재 Eye-Net 이란?

- 언론중재 Eye-Net은 전자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산정보시스템입니다.
-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상담, 조정 및 중재신청, 심리준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 Eye-Net을 찾아주세요.

언론중재 Eye-Net 이용안내

1. **전자제출** _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_ 물고 답하기와 1:1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송달 확인** _ 위원회에서 전자 송달한 각종 통지서, 조정조서, 결정서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나의 전자심리** _ 나의 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진행 중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www.pac.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pacnews 트위터: twitter.com/pac_news